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등의 국어능력향상 교육 의무화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0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기관등의 국어능력향상 교육 의무화 등(안 제14조)	3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3 신설 등)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9.

다. 회 부 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문서등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문서등에서 여전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등이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한국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자격 취득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문서등 작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등의 국어능력향상 교육 의무화 등(안 제14조)

개정안은 공공기관등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문서등의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생략) <u><신 설></u>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표준화, 어문규범의 준수와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생략)</u> <u><신 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문서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공문서등의 작성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전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 ----- 교육 실시, 평가 및 공개 등에 -----.</u>

현행법¹⁾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에 대하여 한글 사용을

1)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원칙으로 하고, 공문서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문서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 정책명 등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및 외국어 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²⁾이 있음.

이에 국민들의 상당수가 공공기관 언어에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50.1%), 익숙하지만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44.1%), 낯선 한자어·외국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40.6%)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³⁾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등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국어능력 향상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공공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 정책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p.1, p.208, p.210 등, 국립국어원, 2021.11.

3) 「202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이은빈), 2025.1.

문의 국어 사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문서 작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부처 업무보고자료 및 홍보물 등이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이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공문서 평가제도⁴⁾를 운영하며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⁵⁾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공개 외에 각 기관별로 공문서 작성 실태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조치 및 그 근거가 없다는 점⁶⁾에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 논의에 있어 현재 공공기관별로 국어책임관⁷⁾을 지정하여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평가 결과(등급)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청 및 공공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있음.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7)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전국 국어책임관 현황]

(2026년 3월 기준)

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교육청 및 지원청	공공기관	특수법인
2,315명	51명/1,362명	17명/226명	17명/249명	342명	51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문서 평가 대상기관의 국어 사용 역량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권한을 마련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임.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3 신설 등)

개정안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대여·차용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한 범죄경력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u><신설></u>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제19조의3(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u> <u>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u> <u>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현행	개정안
	<u>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u> <u>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u> <u>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u> <u>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u> <u>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9조의4(자격취소) ----- -----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u>대여한</u> 경우 <신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 ----- <u>빌려준</u> ----- 3.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6조(청문) ----- -----. 1. 제19조의4----- 2. (현행과 같음)

현행법⁸⁾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차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나 자격 취득과 관련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어교원 자격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

8)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자에게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으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경력, 학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등을 거쳐 취득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 취득자는 국내 대학 부설 교육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외 세종학당 및 한글학교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현황]

(2025년 12월 기준)

계	1급	2급	3급
102,565명	4,973명	81,865명	15,727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한국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격 취득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마약 중독자,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사 임용 결격사유,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⁹⁾와 같이,

9)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자 등을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참고로 문화예술교육사, 체육지도사, 청소년지도사 등 유사한 국가자격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죄경력자 등에 대하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¹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교원 자격의 책임성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동의하되,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문 의 처
02)6788-5379

□ 사전 조치 필요 사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제5조제1항)

- 자격 취득 요건별로 명시된 제출서류에 마약 검사 진단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범죄경력조회) 등 추가 필요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처리 기간(현 50일) 연장 필요(최소 60일)
※ '25년 심사 신청 건수: 11,626건('25년 2차 7,148건 접수로 심사 기간 14일 연장)

○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 부담 가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 필요

- 마약 검사를 위해 신청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약 2~3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 국외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방법 및 절차 마련 필요

○ 한국어교원 자격 시스템 기능 개발

- (사용자 시스템) 자격 심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기능 및 비동의자 서류 제출 기능, 마약 검사 진단 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 기능 개발
- (관리자 시스템) 자격 심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자와 비동의자를 구분하여 제출 서류 확인하는 기능, 결격자 불합격 처리 기능 개발

○ 교원 자격 운영계획 및 일정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

- 자격 심사 요건 추가 등으로 인한 심사 기간 소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계획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의·일정 조율 등 필요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운영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원 양성기관(266개 기관) 등